
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576호
----------	--------

2021. 03. 16.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03. 02. 임준희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03. 04. 복지건설위원회
- 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

2021. 3. 16. 상정 ·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임준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의류수거함의 설치·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(안

제3조 ~ 제4조).

○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.

○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및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 함(안 제6조 ~ 제8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○ 도로변 및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·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함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의류의 재활용 촉진 및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를 위한 구청장,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.

- 안 제5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하여

운영·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·관리자로서의 업무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.

- 안 제9조는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철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의류의 재활용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재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, 초기에는 의류를 비닐봉지에 담아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하였으나,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주택,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불법적으로 의류수거함이 생겨남.
- 양천구 또한 초기에 개인 및 단체에서 무분별 하게 설치하였으며, 다양한 형태의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, 개인 및 단체의 경쟁으로 중복 설치, 주민통행 불편, 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.
- 양천구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하여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, 또한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기준 마련,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등을 권고함.
-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촉진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 할 것이라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6명 만장일치 의결)**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